

# 「구미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」 검 토 보 고 서

## 1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## 2. 제안이유

- 「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」이 신설(2021. 10. 19.)됨에 따라 2023. 1. 1. 시행을 위해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제도 시행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## 3. 주요내용

-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제정 목적(안 제1조)
- 답례품 선정위원회 구성 및 답례품 선정(안 제2조~제6조)
- 지정 금융기관의 위탁(안 제7조)
- 고향사랑 기금의 설치 및 운용 (안 제8조~제24조)
- 부칙 : 조례 시행을 위한 준비 행위 등

## 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 법 시행령
- 예산조치 : 2023년도 본예산 반영(사업 준비 비용 1억원)
- 합 의 : 기획예산담당관, 감사담당관과 합의되었음.

## 5. 검토의견

### ○ 본 조례안은

- 상위법 신설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으로,

### ○ 검토 결과,

- 행정안전부의 참고 조례안(표준 조례안)을 기초로 만들어진 조례안으로 상위법 저촉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며, 고향 사랑 기부금 제도가 정착되면 시 재정수입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함.
- 향후 집행부에서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들로 답례품 선정 위원회와 기금운용 심의위원회를 신속하게 구성하고, 특혜 논란이 없도록 공정한 절차를 거쳐 답례품과 공급 업체를 선정하여야 할 것임.